임대차계약서

갑 : 비즈온방배센터 을 : 테라스(김연수)

위 갑과 을은 2020년 7월 28일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을 체결한다.

제1조 본 계약의 목적
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과 동시에 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갑-을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한다.

제2조 을의 권리 및 책임

- 1) 갑은 을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갑의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
- 2)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■대상: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21, 4층 474호(방배동)

■ 용도 : 철근콘크리트, 업무용 ■ 평수 : 2m²

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업체 주소는 **반드시 호수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**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
- 3) 을은 상기한 제2항의 사무실 제공과 동시에 부대시설(회의실 등)을 갑이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4) 을은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무실과 부대시설에 야기된 제반 손상이나 훼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.
- 5) 을은 건물주 및 갑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즉시 갑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(6개월간의 월회비와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경비)에 대하여 배상을 한다.
- 6) 상기 제5항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관련 정보제공, 법적인 문제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. (또한, 채권 가압류의 경우 즉시항고,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포함한다.)

제3조 계약기간

1)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예치금

- 1)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예치금 #<u>220,000</u>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(제5조 선납에 따라 할인 가능하므로 제5조 확인)
- 2) 위 제1항에 명시된 예치금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보유하며, 계약기간 만료 또는 종료시 을이 갑에게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고, 갑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자 주소지와 전화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여야 한다. 이것이 확인된 후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한다. 단, 예치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 (예치금 카드결제시 부가세 10% 공제 후 반환하며, 기본 계약기간인 3개월 내 퇴실시 예치금은 환급하지 않는다.)

제5조 회비 및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

- 1) 을은 매월 _____ 28일에 월 회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
- 2) 월 회비나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,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여타 권리와는 별도로 연체료 월 2%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



월회비	₩ <u>110,000</u> (VAT포함)
할인내역	12개월 선납 월 55,000(VAT포함) - 예치금 없음
	최종 월회비 # 55,000(VAT포

3) 월회비나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, 갑은 '을'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무실 및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 월회비 미납시 '을'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할 수 있다.

제6조 갑의 면책사항

- 1) 본 계약서의 내용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, 갑은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을에게 사전 고지하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, 갑은 본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2) 을이나 제3자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여하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.
- 배수관, 스프링쿨러, 연기 혹은 기타 물질이 건물에서 누출될 경우
- 건물의 서비스와 설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
- 건물의 보안이나 보호
- 3)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세무전문서비스는 을과 갑의 제휴세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 세무전문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4) 을의 우편물 주소 변경 미고지 또는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및 분실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7조 계약의 양도 금지

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8조 계약의 해지 및 갱신

- 1) 을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, 본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러한 의사를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.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,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.
- 2) 을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, 이후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후를 계약만료일로 하여 해당 기간의 사용료 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.
- 3) 1), 2)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 만료일까지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 이전 서류를 을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이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), 2)항에 따른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이전 서류를 제출 시까지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.
- 4) 월회비 할인율 및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, '을'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 할인받은 총금액, 프로모션 지원금 등을 최종 정산시 일괄 반환한다.
- 5) "을"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만료기간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인 3개월이내 해지시 예치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(퇴실을 고지한 다음날부터 1개월 후까지 이용료가 부과되며, 폐업 또는 법인등기주소 및 사업자주소이전 서류를 을이 제출하여 확인할 때까지 이용료가 부과된다. 대부업은 최초 계약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며, 최초 계약기간 이내 퇴실시 예치금을 환급하지 않는다.)
- 6)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을에게 표시하여야 하고, 을은 사업자주소지 이전 등 퇴실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사업자주소지 이전 등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을의 피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7) "을"이 비즈온 사업장 주소지로 카드가맹을 낼 경우 반드시 센터와 사전합의 후 진행하며, 가맹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며, 만일 불미스런 사업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. "갑"은 상황에 따라 "을"의 카드가맹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- 8)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



- '을'이 30일 이내 2회 이상 갑으로부터 납부 권고를 받고도 월 이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'을'이 '갑'이 규정한 '회원이용안내'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, 또는 '갑'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.
- '을'이 '갑'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계약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
- '을'의 업무가 반사회적이거나, 현행 법률에 저촉되어 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'을'로 인해 '갑'과 '갑'의 이해당사자에게 법적인 문제(채권 가압류 등)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

제9조 위 제8조 제8항에 의거하여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

- 1) 해지 3일 이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월회비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산하고 울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- 2) 을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의 유치물품을 퇴거해야 하며,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을의 유치물품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3) 본 계약서에 명시된 월회비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, 갑은 사무실 또는 건물에 있는 을의 자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담보권을 취득한다. 만일 을이 갑의 서면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자산을 이전 및 임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 분쟁의 해결

- 1) '갑'과 '을'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, 해당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에 의하여 상호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.
- 2)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.
- 이상과 같은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며, 양 당사자는 본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각기 서명 날인하여 1부씩 이를 보관한다.

갑 : 비즈온 방배센터 대표자 : 전 진 목가 되었다.

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21, 4층 (방배동)

계좌정보

은행 : KEB하나은행 예금주 : 전진욱

계좌번호: 179-910314-89307

이메일: bizbb@thebizlife.co.kr

사업자번호: 164-30-00349

연락처: 02-2138-5004

팩스: 070-4009-4639

을 : 테라스

대표자: 김 연 :

주민등록번호: 550129-2030122

사업자번호(법인등록번호): 770-09-01377

주민등록상 주소 : 서울시 동작구

동작대로 29길 119 극동 108-1408

우편물 : 개봉 후 카톡 발송(광고는 폐기)

연락처: 010-7733-5265

이메일: terrace_pr@naver.com

예치금 반환 계좌

신한은행 110-512-731766

비상 연락처

윤성현 010-9277-5265



비즈온방배센터



